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793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12월 16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‘빈곤’이라는 단어 삭제만으로 모든 여성·청소년에게 위생물품 지원의 확고 부동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, 의회와 시의 협력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후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하도록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19조제6항).
- 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 제7항).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19조제6항 중 “교육 및 정보 제공,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
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
지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 신·구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</p> <p>⑥ <u>시장은 빈곤</u>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,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</p> <p>⑥ <u>시장은</u>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<u>교육 및 정보 제공,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</p> <p>⑥ <u>시장은</u>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<u>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<u>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안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 신·구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정안
<p>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</p> <p>⑥ <u>시장은 빈곤</u>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,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</p> <p>⑥ <u>시장은</u>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<u>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<u>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